

대통령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기금의 사용)

8. 원자력발전의 감축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의 비용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의 이행으로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 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4조(기금의 사용) ----- ----- ----- -----.
1. ~ 7. (생 략)	1. ~ 7. (좌 동)
8. (신 설)	8. 원자력발전의 감축에 필요한 비용 으로서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 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
<u>부 칙</u>	<u>부 칙</u> <u>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u> <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사업자의 비용보전에 관한 적용</u> <u>례) 제3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u> <u>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u> <u>의결한 에너지전환의 이행으로 발생</u> <u>한 비용부터 적용한다.</u>